

강원도립대학교 선행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 2019-02-28 규정 제507호
(전부개정) 2024-02-28 규정 제6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의2(학점의 인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선행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선행학습이란 대학 입학 전에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 ② 평가인정이란 선행학습을 평가하여 우리 대학의 교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적용범위) ① 학점인정대상은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② 학점인정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 및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전공 교과 이수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단, 교양 과목은 6학점 이내 인정)
2. 대학 간 협약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다른 학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4.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5. 군복무 경험(사회복무 경험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리더십 및 사회봉사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60시간 이상 시 인정
6.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한 경우: 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상 후진학 인정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③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 제3조 제2항 각호를 중복하여 인정할 경우 전공학점은 최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인정하고, 교양학점은 최대 10학점까지 인정한다.

④ 학점인정 교과목은 학과별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으로 하되,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선행학습 경험에 해당하는 관련성은 학과(부서)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4조(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 직무경험 또는 학습경험 등의 선행학습 결과에 대해 객관적 절차를 통해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학과에서는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회는 해당 교과목의 개발·개편을 관장하는 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로 한다.
2. 평가위원회는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내용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선행학습경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교육혁신원장, 각 학과의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등을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점인정 심의 적용 범위는 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해당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절차) ① 교학처는 매 학기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학과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소속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과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선행학습경험 평가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교학처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교학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최종 확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결과적용) ① 심의위원회의 인정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평가인정 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2. 평가인정 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학기 말에 P를 부여
3. 평가인정 된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

② 대학은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득학점 과정을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업무관리)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및 후속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교학처에서 관장한다.

제9조(기타) ① 학습경험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4. 02.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영역	상세내용	비고(제출서류)
① 국내·외 대학 학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교과 및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전공 교과 이수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단, 교양 교과목은 6학점 이내) - 성적 C0(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인정 - 평가표(서식-1)를 학과에서 1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평가표(전공, 교양) ② 타대학 성적 증명서 <p>※ 필요시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p>
②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전공 유관 경력에 한함 -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1년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1일8시간, 주5일근무기준) - 2024학년도 입학생 기준 2년제 :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6학점 이내, 3년 이상 5년 미만 12학점 이내, 5년 이상 15학점 이내 3년제 : 근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6학점 이내, 3년 이상 5년 미만 12학점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 15학점 이내, 10년 이상 20학점 이내 - 평가표(서식-2) 및 직무기술서(서식-3)를 각 학과에서 1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경력증명서 ④ 직무기술서 ⑤ 기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일체
③ 군 복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복무 중 경력(사회봉사, 리더십) - 60시간 이상 이수 시 인정 - 평가표(서식-2)를 각 학과에서 1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② 군(육·해·공군) 경력증명서
④ 평생직업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 평생직업교육과정 수료자 - 운영 부서 및 대학 간 선행학습 학점인정 교과목으로 교육과정표에 지정된 경우 인정 - 평가표(서식-2)를 각 학과에서 1차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② 프로그램 수료증
⑤ 국가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자격시험 필수 교과목에 한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점인정신청 및 평가표 ②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 사본 ③ 자격증 필수 교과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인정 받을 수 없으며, 영역별 중복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 전공학점인정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교양 학점인정 범위는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